

처분사전통지서(청문실시 통지)

「행정절차법」 제21조제2항에 따라 우리 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청문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예정된 처분의 제목	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취소					
당사자	성명(명칭)	진 동 식				
	주 소	부산광역시 기장군 철마면 안평로 11번가길 24				
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	○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 결격사유에 해당 (피성년후견인 · 피한정후견인)					
처분하고자 하는 내용	○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(기계가공 3급) 취소					
법적근거 및 조문내용	○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34조, 제35조 ○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제17조 별표4					
청문실시	기관명	중부지방 고용노동청 부천시청	부서명	부천고용 센터	담당자	허 준 호
	주소	경기도 부천시 길주로 351 6층			전화번호	032-320-8997
	일시	2022년 12월 27일(월) 16:00			장소	부천고용센터 6층 HRD상담실
	주재자	소속 및 직위	중부지방고용노동청부천시청 산재예방지도과장			
		성명	김 광 오			

<청문시 유의사항>

1.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, 참고인·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. 만일,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.
2.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. 다만,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.
3.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「행정절차법」 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4.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 끝.



중부지방고용노동청부천시청장

